

의안번호	2125894
의 퇴 인	박대출의원
회 답 일	2024. 01. 09.
추 계 번호	23D503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억 6,500만원(연평균 5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(안 제8조의8제1항)	53	53	53	53	53	265	53

- 주: 1.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(안 제8조의8제1항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, 위원회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의 범위 확대로 위원회 개최 횟수와 안전검토 건수가 50%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2. 중앙과 시도(17개)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추계하고 참석수당과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8제1항(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)	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이때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포함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8제1항 (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’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가 포함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위원회 개최 횟수와 안전검토 건수가 50%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- 중앙과 시도(17개)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추계하고 참석수당과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’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개최횟수 및 안전검토 건수의 증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본 추계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위원회 개최 횟수와 안전검토 건수가 50%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- 중앙 및 17개 시·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
 - (중앙) 2023년 기준 8명의 심의위원이 10회 참석하고 5건의 안전 검토
 - (17개 시·도) 2023년 기준 8명의 심의위원회 3회 참석하고 1건의 안전 검토
 - 개정안에 따라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5회, 안전검토는 3건 증가하고 17개 시·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2회씩, 안전검토는 1건씩 증가
 - 참석수당과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(중앙) 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 각각 15만원
 - (17개 시·도) 참석수당 12만원, 안전검토 수당 8만원
- 추계결과,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억 6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선거여론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: 2025~2029년

구분		2025	2026	2027	2028	2028	합계
중앙 (A)	위원 수(a, 명)	8	8	8	8	8	-
	개최횟수(b, 회)	5	5	5	5	5	-
	안전검토(c, 건)	3	3	3	3	3	-
	참석수당(d, 만원)	15	15	15	15	15	-
	검토수당(e, 만원)	15	15	15	15	15	-
	재정소요(=a×(b×d+c×e), 만원)	960	960	960	960	960	4,800
17개 시·도 (B)	위원 수(a, 명)	8	8	8	8	8	-
	개최횟수(b, 회)	2	2	2	2	2	-
	안전검토(c, 건)	1	1	1	1	1	-
	참석수당(d, 만원)	12	12	12	12	12	-
	검토수당(e, 만원)	8	8	8	8	8	-
	재정소요(=17×a×(b×d+c×e), 만원)	4,352	4,352	4,352	4,352	4,352	21,760
추가재정소요(=A+B, 백만원)		53	53	53	53	53	265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위원회 개최 횟수와 안전검토 건수가 50%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오명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